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85
----------	-----

제출연월일 : 2016. 6. 16.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2조제6호나목,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

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 확대(안 제10조)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다.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안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생산시설 및 비료 창고 등을 방치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바,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비료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의 금지(안 제20조의2 및 제28조제3호 신설)

비료의 성분·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일부터 1년간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바.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현행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삭제)

비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등을 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조에 따른”을 “제4조에 따라”로, “정하여진”을 “설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을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판매하는”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물비료”를 “비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를 “설정·변경 또는 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을 “설정”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로,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을 “설정된”으로, “판매할”을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를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를 각각 “비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에”를 “검사기준·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내에”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 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판매”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에”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비료수입업자가 그 비료수입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료업자”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비료업자가”를 각각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열”을 “보관·진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을 “비료생산업자등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관”을 “보관·진열”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준을 초과한”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으로 한다.

2.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을 각각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한”을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을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판매한”을 각각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

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과대광고의 범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자료제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중 “농촌진흥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판매한”을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매한”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열”을 “보관·진열”로 한다.

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3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로 한다.

제31조에 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u>제4조에 따른</u> 공정규격이 <u>정하여진</u> 것을 말한다.</p> <p>3.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u> 것을 말한다.</p> <p>4·5. (생 략)</p> <p>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생 략)</p> <p>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u>판매하는</u> 것을 업</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제4조에 따라</u> -- ----- <u>설정된</u> ----- --.</p> <p>3. ----- ----- ----- ----- ----- ----- ----- ----- ----- ----- <u>제4조에 따라 공</u> <u>정규격이 설정된</u> -----.</p> <p>4·5. (현행과 같음)</p> <p>6.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u>판매하거나 무상으</u></p>

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
에 따라 신고한 자

다. (생략)

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생략)

②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
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
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
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
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
물비료의 지정·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
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려는 자
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
비료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

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

다.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비료 -----

-----.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

-- 설정·변경 또는 폐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설정

----- 판매하거나 무
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 -----

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 고도 생산·수입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

----- 설정된 -----

----- 보관·진열 -----

----- ·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할 -----

-----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

비료-----

② -----

----- 비료-----

③ -----

성의 기준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검사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
----- 판매하거나 무
상으로 유통·공급-----

-----.

② -----

----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

③ 비료수입업자가 그 비료수입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③ (생략)

제13조(영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비료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비료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비료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신설>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 ① (생략)
-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

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영업의 승계) ① -----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 -----.

1. 비료생산업자등이 -----

2. 비료생산업자등이 -----

3. ----- 비료생산업자등이 --

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 ① (현행과 같음)
- ② -----

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
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7. (생략)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종류별
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장부
(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품질 검사) ① 삭 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수입·보
관·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

---보관·진열-----
-----.

1. ~ 5. (현행과 같음)

6. 비료생산업자등이 -----

7.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품질 검사)
② -----

-----보
관·진열-----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

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 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성분량(含有分量)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4. 5. (생략)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 조치) -----

-----.

1. (현행과 같음)

2.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

3. -----

----- 기준에 맞지 아니한 -----

4. 5. (현행과 같음)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

----- 6개월 -----

-----.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
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5.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
를 판매한 경우

6. (생 략)

7.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8. ~ 11.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1. · 2. (현행과 같음)

3. -----

----- 보관·
진열·판매·유통하거나 ---

4. -----

----- 보관·
진열·판매·유통하거나 ---

5. -----
- 보관·진열·판매·유통하
거나 공급한 --

6. (현행과 같음)

7. -----

----- 보관·진열·
판매·유통하거나 -----

8. ~ 11. (현행과 같음)

②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4.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6개월 -----

1. (현행과 같음)
2. -----

-----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
3. -----

-----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
4. -----
-----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
5. -----

-----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

6. ~ 9. (생략)

③ (생략)

<신설>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 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제

6.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과대광구의 범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① ----- 비료생산업자등이 -----

② (현행과 같음)

③ ----- 비료생산업자등이 -----

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

계 시에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생략)

제24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①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자료제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

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

-----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

제27조(벌칙) -----

-----.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

3.·4. (생략)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6. ~ 8. (생략)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
-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2. -----

-----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3.·4. (현행과 같음)

5. -----
----- 보관·진열

6. ~ 8.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30조(과태료) -----

<p>한다.</p> <p>1. 2. (생략)</p> <p>3. <u>제2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p> <p>4. <u>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서류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u></p> <p>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p> <p>1. 2.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4. <u>제24조</u>----- ----- ----- -----</p> <p>제31조(과태료) ----- -----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u>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u></p> <p>2. (현행과 같음)</p> <p>3. <u>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u></p> <p>4. <u>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	---